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2110-4894), 안진호 사무관 (2110-5468)

2.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 지식경제부(장관:홍석우)는 **2월 22(금)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밝힘(용도별 세부 변경 내역은 붙임 참조)

< 2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서울시 기준) >

(단위 : 원/MJ, VAT 별도)

구분	현행(A)	변경(B)	증감(B-A)
평균	19.6607	20.5173	0.8566 (4.4%)
주택용(난방용)	20.0750	20.9316	0.8566 (4.3%)
주택용(취사용)	19.9498	20.8064	0.8566 (4.3%)
산업용	18.7292	19.5858	0.8566 (4.6%)
일반용(영업용1)	20.9669	21.8235	0.8566 (4.1%)
일반용(영업용2)	19.9652	20.8218	0.8566 (4.3%)

* 산업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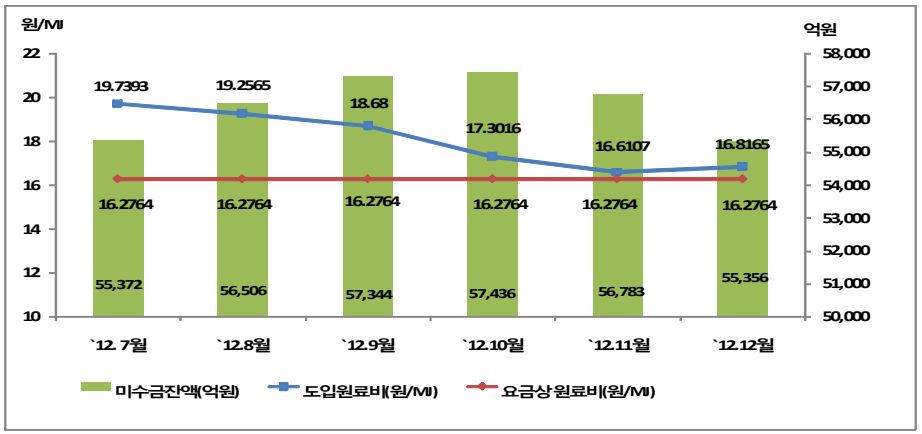
* 도 입 원료비(원/MJ) : ('12.7)19.7393 → ('12.10)17.3016 → ('12.12)16.8165
* 요금상 원료비(원/MJ) : ('12.7)16.2764 → ('12.10)16.2764 → ('12.12)16.2764

- 그간 요금동결로 천연가스 도입원료비가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해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 가스공사 미수금 : ('11년말) 4.4조원 →('12년말) 5.5조원
* 가스공사 부채비율(별도기준) : ('07) 228% → ('11) 364% → ('12^{e})394%

- 향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

< '12년 하반기 도입원료비 및 요금상 원료비 추이 >



○ 금번 요금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월 하순으로 인상시기를 조절**하였으며, **가구당 2월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약 1,127원/ 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구당 2월 평균 요금(VAT포함) : (조정전) 105,565원 → (조정후) 106,692원
* '12년 2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111m^3 (= 4,784MJ) 기준

〈 붙임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3.2.22 서울시 기준)

(단위 : 원/MJ, VAT 별도)

구 분 (도매)	구 분 (소매)	현 행	변 경
주택용	취 사 용	19.9498	20.8064
	개별난방	20.0750	20.9316
	중앙난방	20.0750	20.9316
업무난방용		20.8698	21.7264
일반용	영업용1	20.9669	21.8235
	영업용2	19.9652	20.8218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20.8214	21.6780
	하절기	13.0258	13.6683
	기타월	19.9473	20.8039
산업용	동절기	19.0512	19.9078
	하절기	18.5184	19.3750
	기타월	18.5184	19.3750
열병합용1	동절기	20.2914	21.1480
	하절기	19.0777	19.9343
	기타월	19.2998	20.1564
열병합용2	동절기	19.7906	20.6472
	하절기	18.7769	19.6335
	기타월	18.7769	19.6335
열전용설비용		21.3561	22.2127
수송용		20.7736	21.6302
평 균		**19.6607**	**20.5173**

* 동절기: 12월～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월과 10～11월
* 영업용1 :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용,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